

#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충·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,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「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작성례에 따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복무선서 및 책임완수,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- 당직 및 비상근무, 겸임근무,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연가계획 및 허가,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작성례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상충·중복되는 조문을 삭제, 정비하여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간단,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